

1. 서론 (조세개요)

조세론 (재정학II)

Rosen의 재정학 PUBLIC FINANCE

EIGHTH EDITION

Harvey S. Rosen, Ted Gayer 공저
이영 · 전영준 · 이철인 · 김진영 편역

Mc
Graw
Hill
McGraw-Hill Korea

KYOBO
교보문고

보조 교재

THIRD EDITIO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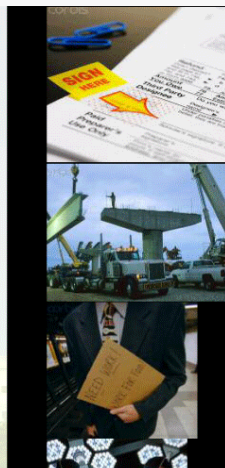
WORTH

THIRD EDITION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JONATHAN GRUBER

Ch.19 조세귀착이론
Ch.20 조세효율성 이론



Mankiw

보조 교재

제 **12** 장

Ch.12 조세제도
Ch.08 조세비용



주요 교재

Rosen의 **재정학**

PUBLIC FINANCE

EIGHTH EDITION

Harvey S. Rosen, Ted Gayer 공저

이영

Ch.01 조세개요
Ch.12 소득재분배
Ch.13 빈곤계층 재정
Ch.17 소득세
Ch.19 법인세
Ch.21 소비세

Mc
Graw
Hill

McGraw-Hill Korea

교보문고

보조자료

제21대 국회개원

2020 조세수첩

Tax Statistics 202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0 조세론의 관심대상

□ 정부의 양면성

- 정부는 꼭 필요하지만
- 정부 활동을 위해서 조세가 부과. 또한 정부가 개인 재산을 탈취할 위험성

□ 정부의 역할

- 자원배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경쟁(->산조론), 정보의 비대칭성
- 소득분배: 지출과 조세
- 거시경제 안정(-> 거시경제)

□ 이러한 정부 역할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 실행과정

1.0 조세론의 관심대상

- 재정학(Public Finance)
 - 정부와 민간 관련 조세와 지출정책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 공공부문 경제학(Public Sector Economics) 혹은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으로도 지칭
- 재정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 규제정책 - '산업조직론'에서 논의
 - 거시경제정책 - '거시경제학'에서 논의

1.1 재정책/조세론과 정부 이념

- 사회라는 유기체적 관점 – 개인은 공동체의 한 부분이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조
 - 플라톤의 ‘공화국’
 -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Nazism)
- 기계론적 관점 – 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장치
 - Henry Clay : 정부는 하나의 신탁(Trust)이며, 공무원들은 수탁인(trustee). 그리고 이 신탁과 수탁인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창조되었음
 -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하는가?
 - 자유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등
- 이 책의 관점은? – 주로 현대경제학적 사고는 기계론적 관점과 부합

정부에 대한 개관 : 예시

1.2 정부의 경제활동 관련 법체계

- 한국의 법체계
- 미국의 법체계

1.3 미국의 재정 규모와 구성

- 정부규모에 대한 정의와 미국의 정부규모
- 미국의 재정지출 구성
- 미국의 재정수입 구성

1.4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재정 규모와 구조

- 한국의 정부 규모
- 한국의 재정지출 구조
- 한국의 재정수입의 규모와 구조

1.5 강의 구성

1.2 한국의 법체계 – 재정지출

□ 재정지출 관련 헌법의 규정

- 헌법상에 특정 분야 또는 활동이 정부의 의무(또는 국민의 권리)로 명기
 -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헌법 제34조),
 - 소득분배(119조 2항),
 - 무상 의무교육과 교육기회 균등 보장(헌법 31조),
 -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5조),
 - 과학기술의 혁신(127조 1항),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119조 2항),
 - 환경 보전(35조 1항),
 - 납세의무(38조)

1.2 한국의 법체계 – 재정수입

- 재정수입 관련 헌법의 규정: 조세 + 국채 발행
 - 조세법률주의: 조세가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징수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정부의 재정조달 수단은 조세
 -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
 - 15개 국세 + 16개 지방세 -> 현재 14개 국세+11개 지방세
 - 국채발행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의결을 명시
 - 제 58조에서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기

표 1.1 한국의 조세체계와 근거법

조 세 (31 개)	국세 (15개)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 소득세법 법인세 - 법인세법 상속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부당이득세 - 부당이득세법	
			간접세	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법 주세 - 주세법	
		유통세		인지세 - 인지세법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법	
		관세 - 관세법 교통세 - 교통세법('94.1월 시행) 교육세 -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94.7월 시행)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05.1월 시행)			

표 1.1 한국의 조세체계와 근거법 (계속)

	지방세 (16개)	도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지방세법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우리나라 조세체계 (최근)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분)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관세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관세 감면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종업원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주민세(재산분) • 자동차세(소유분) • 지방교육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자동차세(주행분) • 지방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1.2 미국의 법체계 - 재정

□ 연방정부

○ 미국 헌법의 주요 내용

- 헌법 8장 1조; 헌법 9장 1조
- 제16차 헌법개정; 제5차 헌법 개정

□ 주정부

○ 연방헌법 규정: 제10차 개정헌법

○ 주헌법

□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조세징수와 재정지출에 대한 권한은 주정부에 의해 부여
- 지방정부의 자율권

1.3 한국의 재정 규모/구조와 국제비교

□ 재정규모, 재정 수지, 국가 채무

○ 규모는 국제 비교하면 작은 편

- 단, 경제, 사회 여건의 상이함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음.

○ 재정수지면에서도 아직 흑자를 기록

- 단, 관리대상 수지는 적자

○ 국가채무 수준도 낮은 편

○ 공무원수

□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표 1.4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규모간의 국가간 비교

(GDP 대비 비율(%), 공무원 비율은 전체 피용자 대비 비율(%))

	2004년				1998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공무원비율
스웨덴	58.3	56.7	1.6	58.9	31.2
덴마크	56.7	54.7	1.9	49.9	30.7
핀란드	52.5	50.4	2.1	51.6	25.2
프랑스	49.6	53.3	-3.7	73.3	24.9
독일	43.5	47.3	-3.7	68.8	15.4
오스트리아	49.1	50.4	-1.3	69.4	22.8
벨기에	49.3	49.4	-0.1	98.5	19
이탈리아	44.3	47.8	-3.5	117.5	16.1
스페인	38.5	38.7	-0.2	52.7	15.7
호주	36.7	35.1	1.6	17.2	16
영국	40.5	43.8	-3.3	43.7	14.1
미국	31.9	36.4	-4.6	61.6	13.4
일본	31	37.3	-6.3	168.1	6
한국	30.6	28.1	2.5	22.6	11.5

표 1.5 일반정부의 기능적 구성 (한국)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일반공공행정	12	11.4	11.8	13.4	12.3	12.1	10.3	12.1	13.1
국방	13.6	11.7	11.5	10.9	9.9	9.8	7.9	8.8	9.3
공공안전 및 치안	6	5.3	5.1	5.2	5.3	5.5	4.5	4.8	4.7
경제사업	25.3	26.5	23.9	23.3	22.7	22.9	32.4	24.1	22.1
환경보호	3.2	2.9	3.1	3.1	3.1	3.2	2.4	3.1	2.9
주택 및 기타 지역 사회개발	4.4	4.7	4.4	4.4	3.8	3.8	4.6	5.4	4
보건	6.2	7.5	8.6	9.8	12.4	12.6	10.5	11.4	12.4
오락, 문화, 종교	1.9	2.4	2.6	2.8	2.9	2.4	2.5	2.7	2.8
교육	18.2	17.4	17.3	16.9	17.4	18.1	15.9	17.1	17
사회보호	9.2	10.2	11.6	10	10.3	9.7	8.9	10.4	11.8

표 1.6 일반정부 지출의 기능적 구성 (국제비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2004	2004	2003	2004	2004	2004	2003
일반공공행정	12.9	10.5	14.5	12	14	13.5	18.4
국방	11.6	6.4	2.6	4.4	3.5	2.9	2.8
공공안전 및 치안	5.8	5.9	3.8	4.7	2.5	1.9	4.3
경제사업	10	6.5	11.3	11.9	8.5	6.5	7.7
환경보호	—	1.4	3.8	1.3	0.6	1	1.7
주택 및 기타지역 사회개발	2	1.6	1.9	2.3	1.5	1.3	1.7
보건	20.5	16.5	18.2	17.2	12.4	13.4	13.2
오락, 문화, 종교	0.9	1	0.4	2.6	1.9	3	2.4
교육	16.8	12.9	10.8	14.7	12.7	14.8	10.6
사회보호	19.5	37.3	31.3	22.9	42.4	41.7	37.2

표 1.7 수준별 정부 지출의 기능적 구성 (한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일반공공행정	10.6	14.7	16.4	12.7	13.2	14	-	-	-
국방	16.3	22.1	23.1	0.2	0.2	0.1	-	-	-
공공안전 및 치안	7.7	10.1	9.8	1.8	1.8	1.7	-	-	-
경제사업	47.9	33.8	29.4	22.7	22.6	22	-	-	-
환경보호	1	1	1	4.7	5.5	5.4	-	-	-
주택 및 기타 지역사회개발	1.4	1.4	1	9.5	10	7.7	-	-	-
보건	5.1	5.7	6.9	3.5	3.7	3.9	61.3	59.1	58.7
오락, 문화, 종교	1.4	1.5	1.7	4.6	4.5	4.5	-	-	-
교육	6	5.9	6.4	31.3	30.4	30.7	1.3	1.2	1.2
사회보호	2.6	4	4.4	8.9	8	10	37.4	39.7	40.1

표 1.8 국민부담률(조세부담+사회보장부담금)의 국가간 비교

(GDP 대비 비율,%)

	1975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스웨덴	41.6	47.8	52.7	48.1	53.4	50.1	50.4	51.1
덴마크	39.3	46.5	46.5	48.8	49.4	47.7	48.8	49.7
핀란드	36.7	39.9	43.9	45.6	47.7	44.6	44.2	44.5
프랑스	35.5	42.4	42.2	42.9	44.4	43.1	43.4	44.3
독일	35.3	37.2	35.7	37.2	37.2	35.5	34.7	34.7
오스트리아	36.7	40.9	39.6	41.1	42.6	42.9	42.6	41.9
벨기에	39.5	44.4	42	43.6	44.9	44.7	45	45.4
이탈리아	25.4	33.6	37.8	40.1	42.3	41.8	41.1	41
스페인	18.4	27.2	32.5	32.1	34.2	34.3	34.8	35.8
호주	25.8	28.2	28.5	28.8	31.1	30.7	31.2	-
영국	35.3	37.7	36.5	35	37.2	35.4	36	37.2
미국	25.6	25.6	27.3	27.9	29.9	25.7	25.5	26.8
일본	20.9	27.4	29.1	26.9	27.1	25.7	26.4	-
한국	15.1	16.4	18.9	19.4	23.6	25.3	24.6	25.6

표 1.9 정부수준별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수입의 구성비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수입의 구성비, %)

	초국가적 조세 (supranational tax)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1975	1985	2004	1975	1985	2004	1975	1985	2004	1975	1985	2004	1975	1985	2004
연방국가															
미국	-	-	-	45.4	42.1	38.5	19.5	20.2	20.6	14.7	12.6	14.7	20.5	25.2	26.3
독일	1.2	1	0.7	33.5	31.6	29.5	22.3	22	21.7	9	8.9	7.4	34	36.5	40.7
오스트리아	-	-	0.2	51.7	48.9	54.3	10.6	13.1	8.6	12.4	10.7	9.4	25.3	27.2	27.5
벨기에	1.5	1.6	1.1	65.1	62.7	33	-	-	23.3	4.5	4.7	5	28.9	31	37.6
호주	-	-	-	80.1	81.4	69.4	15.7	14.9	27.6	4.2	3.7	2.9	-	-	-
단일국가															
스웨덴	-	-	0.6	51.3	54.1	55.7	-	-	-	29.2	30.4	32.4	19.5	15.6	11.4
덴마크	0.5	0.8	0.4	68.5	68.4	62.7	-	-	-	29.8	28.4	34.5	1.2	2.5	2.4
핀란드	-	-	0.2	56	55.7	54.3	-	-	-	23.5	22.4	20.8	20.4	21.9	24.7
프랑스	0.7	0.6	0.5	51.2	47.2	41.9	-	-	-	7.6	8.7	11.1	40.6	43.5	46.5
스페인	-	-	0.4	48.2	47.8	35.3	-	-	-	4.3	11.2	30.4	47.5	41	33.9
영국	1	2.7	1	70.5	69.4	75.5	-	-	-	11.1	10.2	4.8	17.5	17.8	18.8
일본	-	-	-	45.4	43.7	36.7	-	-	-	25.6	26	25.6	29	30.3	37.7
한국	-	-	-	89	-	61.4	-	-	-	10.1	-	17.8	0.9	-	20.7

표 1.10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구성비

(2004, 조세 총액 대비 비율,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급여세	재산관련조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기타조세
연방국가							
미국	70.7	19	—	2.1	—	8.2	—
독일	33.6	4.4	—	—	28.9	33.1	0
오스트리아	31.2	7.3	18	0.4	24.9	13.3	3.3
벨기에	48.4	21.6	4.2	2.9	4.4	17.7	0.6
호주	57.9	26.2	0.2	0	0.6	14.6	0.4
단일국가							
스웨덴	—1.6	11.2	39	5.6	32.1	12.4	1.4
덴마크	30.8	9.2	0.7	2.2	31.7	17.5	2.8
핀란드	22.8	11.9	4	2.8	36	20.5	2
프랑스	18.3	15.2	6.2	4.5	38.8	14.8	2.2
스페인	29.6	26	2.7	0.1	28.6	10.4	0.7
영국	38	10.7	—	9.6	25.2	14.9	1.7
일본	31.4	23.8	—	5.4	20.7	16.4	2.4
한국	20	21.3	—	4	29.3	23.6	1.7

표 1.11 주정부 및 지방정부 조세수입의 구성비 (연방국가, 2004)

(조세 총액 대비 비중, %)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세	자산관련과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재화와 서비스 사용에 대한 조 세	기타조세
미국							
주정부	39.4	—	2.8	33.2	15.7	8.9	—
지방정부	5.4	—	72.3	11.2	4.8	6.3	—
독일							
주정부	48.3	—	5.4	39.8	1.8	4.6	—
지방정부	76.3	—	17.5	5	0.5	0.4	0.2
오스트리아							
주정부	51.5	—	0.7	32.1	5.1	5.6	5.1
지방정부	34.7	20.7	10.6	23.2	3.9	1.8	5
벨기에							
주정부	45.5	—	12.7	35.1	1.2	5.2	0.3
지방정부	85.5	—	—	2.2	7.9	4.2	0.3
호주							
주정부	—	15.6	20.8	46	10.2	7.4	0
지방정부	—	—	100	—	—	—	—

표 1.12 지방정부 조세수입의 구성비 (단일국가, 2004)

(조세 총액 대비 비중,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재산관련조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재화와 서비스 사용에 대한 조 세	기타조세
스웨덴	100	—	—	—	—	—	—
덴마크	91	2	6.9	—	0.1	—	—
핀란드	87	7.9	5	—	0	0	0.2
프랑스	—	—	51.7	—	12.7	2.9	32.7
스페인	23.9	1.7	26.8	23.6	16.8	6	1.2
영국	—	—	100	—	—	—	—
일본	24.4	21.5	31.4	7.8	8.3	5.6	1
한국	7.5	6.8	49.4	—	15.8	5.4	15

1.4 미국의 재정규모와 구성: 예시

- 정부 규모의 측도
 - 공공부문 종사 근로자수
 - 연간지출액
 - 표 1.2 미국 추이; 그림 1.1 국제비교
 - 정부지출의 유형
 -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 소득이전지출
 - 이자지불액
 - 미국의 정부지출 구성
 - 예산서
 - 통합예산(Unified Budget)
 - 규제예산(Regulatory Bud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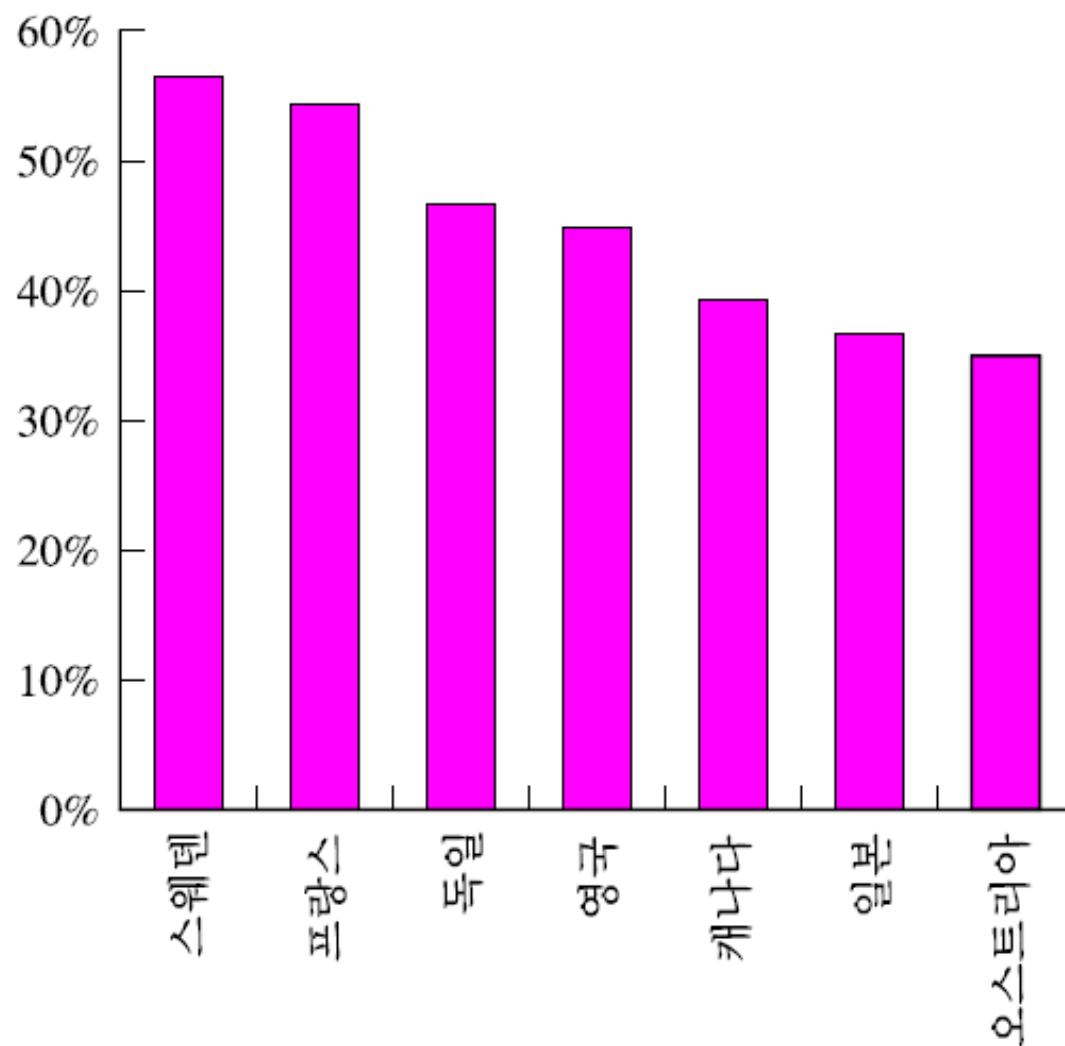
표 1.2 미국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의 지출

	(1) 총지출 (10억달러)	(2) 2005년 불변가격 (10억달러)*	(3) 1인당 지출 (2005년 불변가격, 달러)	(4) GDP대비 비중 (백분률)
1960	\$ 123	\$ 655	\$ 3,627	24.3%
1970	295	1,201	5,858	28.4
1980	843	1,749	7,679	30.2
1990	1,873	2,574	10,289	32.3
2000	2,887	3,237	11,461	29.4
2005	3,876	3,876	13,066	31.1

* 2005년 불변가격 계산에는 GDP 디플레이터 사용
출처: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6[pp.2880, 284, 323, 379]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경상가격으로 보면, 1960년도 이후 정부지출은 31.5배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실질가치로 평가하면 5.9배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실질 지출액은 3.6배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비중은 1960년도에는 그 비중은 24.3%이던 것이, 2005년에는 31.1%로 증가하였다.

그림 1.1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2005년)



1.4 정부지출 규모의 통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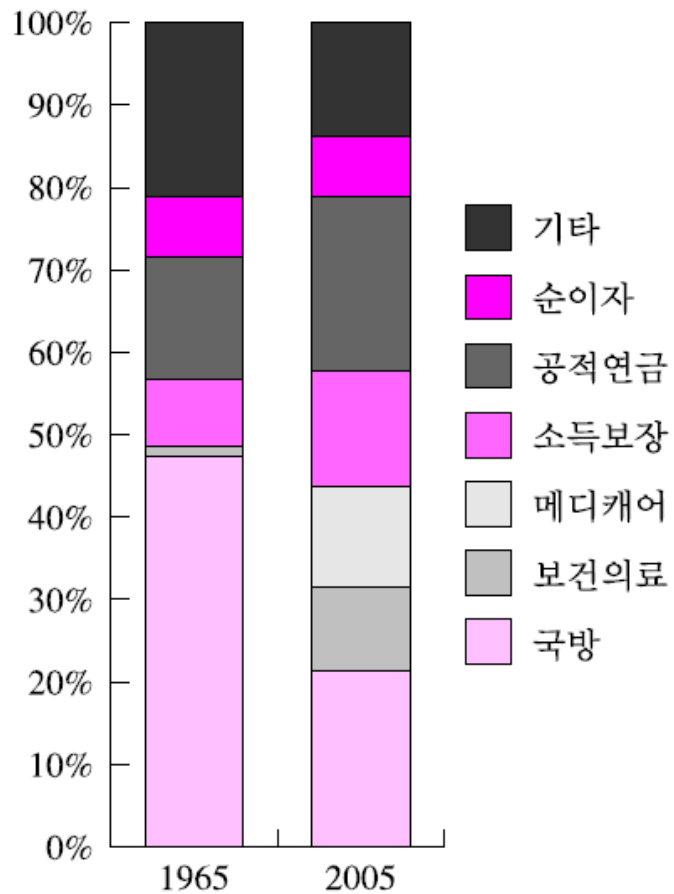
□ 정부지출 구성의 특징

- 수급권보장 프로그램 (Entitlement Program)
 - 복지정책 프로그램, 농업가격보조금 정책
- 이자지불액
- 연방정부 예산의 $\frac{3}{4}$ 이 통제가 불가능한 지출로 구성

□ 정부수준별 지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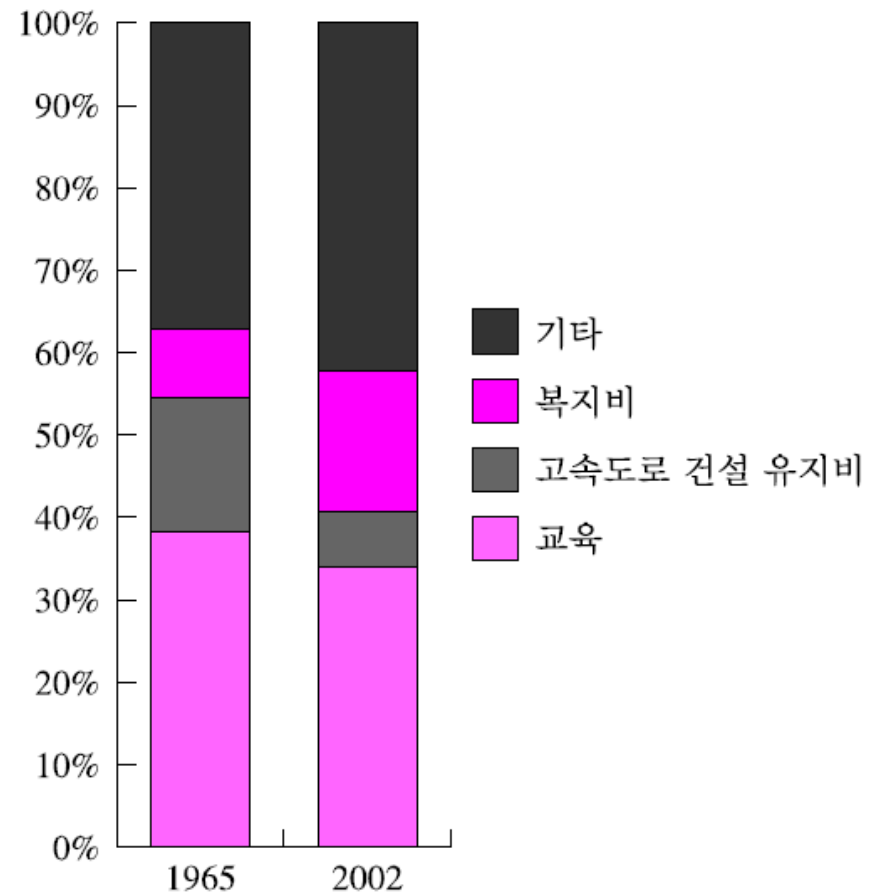
- 연방정부 45%, 주정부 25%, 지방정부 30%
- 주정부, 지방정부: 표 1-2, 표 1-3
 -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교육, 교통서비스, 공공복지지출 등 담당

그림 1.2 연방정부 지출 구성



출처: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6[p.377]

그림 1.3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출 구성



출처: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6[p.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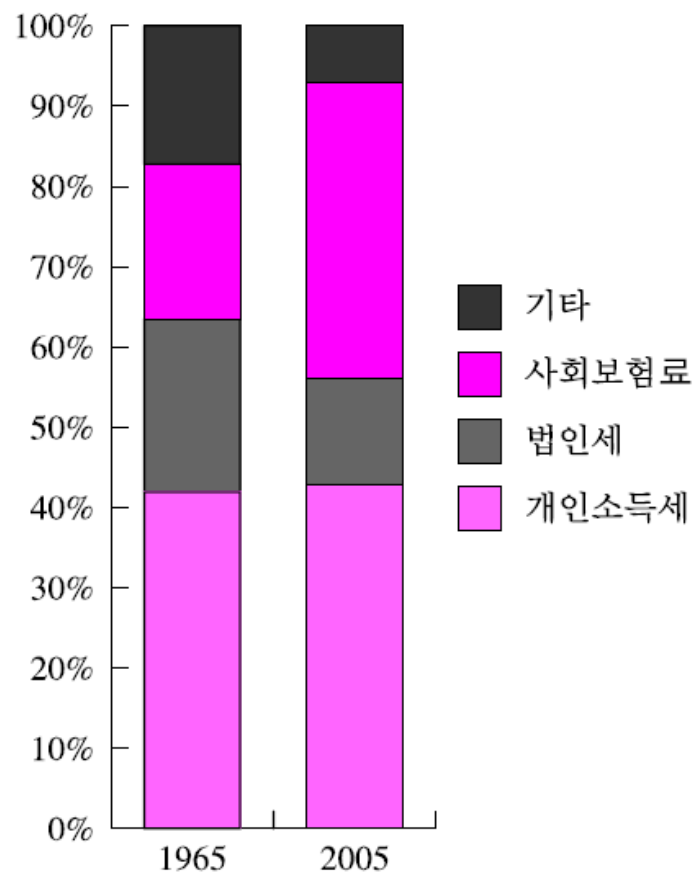
1.4 미국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예시

□ 재정수입 구조의 특징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그림 1.4,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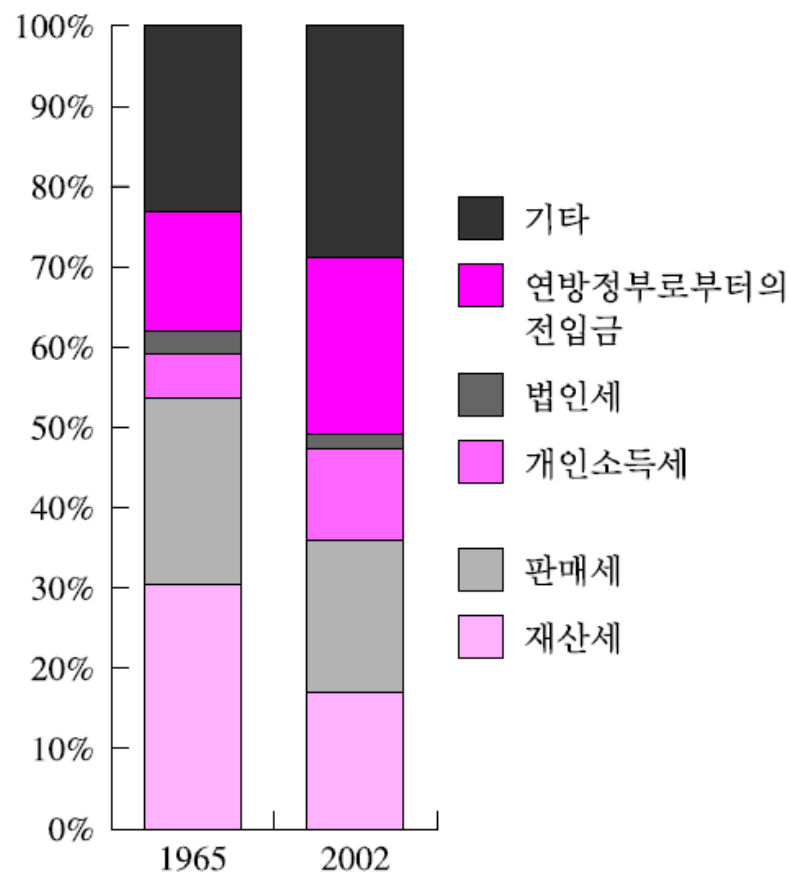
- 개인소득세가 총 조세수입의 43%로서 단일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
- 급여세 수입의 규모는 연방정부 수입의 3분의 1
- 법인세가 1965년 22%, 지금은 13%에 불과

그림 1.4 연방정부 조세 구성



출처: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6[p.377]

그림 1.5 주정부 및 지방정부 조세 구성



출처: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6 [p.383]

1.4 부채의 실질가치 변화

-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부채의 실질가치 감소
 - 정부회계상 수입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채의 실질가치 감소로 인한 이득 고려하지 않음

부록 재정학 연구활동 (한국 자료)

- 재정학 전문 저널
 - 재정학연구
 - 재정논집/공공경제
 - 한국지방재정논집
- 일반 저널
 - 경제학연구
 - 국제경제연구
- 다른 연구분야와 재정학 이슈 연계
 - 사회보장연구 (복지)
 - 노동경제논집 (노동)
 - 한국행정학보 (행정)

재정학 연구활동 (한국 자료)

- 재정학 연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 한국개발연구원 (KDI)
 - 국회예산정책처 (NABO)
- 재정학 이슈관련 정부기관
 - 국회
 -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국세청

재정학 연구활동 (한국 자료)

- 재정학 관련 정부 간행물
 -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예산처)
 - 조세개요 (재정경제부)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지방재정연감,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 미시자료
 - 가구조사 (통계청)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재정학 데이터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 조세통계자료시스템
 - 국가통계포탈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재정학 연구활동 (외국 자료)

□ 재정학 전문 저널

-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 *National Tax Journal*
- *Public Finance*
- *Public Finance Quarterly*

□ 일반 저널

- *American Economic Review*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재정학 연구활동(외국 자료)

- 여타 연구논문 출처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Brookings Institution's *Studies of Government Finance*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reports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s
 - Tax Foundation's *Facts and Figures on Government Finance*
- 미국 정부 간행물
 -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 *Budget of the United States*
 - *U.S. Census of Governments*
 -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from Colonial Times to 1970*

재정학 연구활동 (외국 자료)

-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재정학 데이터
 - *Resources for Economists on the Internet*
 - U.S. Census Bureau
 -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 국제비교에 유용한 자료
 - *Revenue Statistics* (OECD)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MF)

21대 국회개원

2020 조세수첩 (사례)

Tax Statistics 2020



국회에산정책처

CONTENTS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01 조세개요

1. 조세체계	2
2. 조세의 분류	3
3. 조세체계의 변천	4
4. 조세수입	8
5. 조세부담률	9
6.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10
7. 국제비교: 조세구조	16
8. 국제비교: 지출세 비율 등	18

02 국세

9. 국세체계	22
10. 주요 세제법 변천	23
11. 국세수입	28

<소득세>

12. 소득세 과세체계	30
13.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32
14. 소득세 세율	34
15. 소득세수 공할	35
16. 소득세 과세 공할	38
17.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38
18. 국제비교: 소득세 과표구간수	41
19. 국제비교: 소득세 최고세율	42
20. 국제비교: 소득세 부담	47

21. 소득세 최근 개정 동향	49
------------------	----

<법인세>

22. 법인세 과세체계	58
23. 법인세 과세대상	57
24. 법인세 최고한세	58
25. 법인세율, 최고한세율	59
26. 법인세수 공할	60
27. 신고법인수 추이	61
28. 법인세 과세 공할	62
29. 법인세 신고 공할: 기업규모별	64
30. 법인세 신고 공할: 과표구간별	65
31.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68
32.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68
33. 국제비교: 법인세 과표구간수	69
34. 국제비교: 법인세 최고세율	70
35. 국제비교: 법인세 부담	75
36.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	78

<부가가치세>

37.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80
38. 업종별, 면세	82
39. 부가가치세 공할 및 환급	84
40. 국제비교: 부가가치세율	88
41. 국제비교: 감감세율	89
42. 국제비교: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	90
43.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부담	91
44.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	92

<상속세·증여세>

45. 상속세 과세체계	98
--------------	----

CONTENTS

46. 종여세 과세청계	98
47. 상속·종여세 공할	100
48. 상속·종여세 신고세율 추이	102
49. 국제비교: 상속·종여세 부담	103
50. 국제비교: 상속·종여세징	- 104
51. 상속·종여세 최근 개정 동향	- 108

<기타세목>

52. 개별소비세	110
53. 주세	112
54. 교통·에너지·환경세	113
55. 종합부동산세	- 114
56. 종원거래세	118
57. 인지세	117
58. 교토세	118
59. 놀이충당법세	- 119
60. 관세	120

03 지방세

61. 지방세청계	122
62. 지방세명의 변경	123
63. 지방세 세목별 과세청계	- 124
64. 지방세 수입	128
65. 2018년 시도별 세목별 지방세 전수액	- 128

<지방세목>

66. 취득세	132
67. 지방소득세	133
68. 재산세	135

69. 자동차세	137
70. 지방소비세	139
71. 담배소비세	140
72. 지방교육세	141
73. 등록면허세	142
74. 주민세	143
75. 지역자활사업세	144
76. 허가세	148

04 조세지출

77. 국제감면 공할	- 149
78. 국제 세목별 조세지출	149
79. 예상분류별 조세지출	152
80. 조세특례대상제도	- 154
81. 조세지출 관리규정	- 155
82. 지방세 비과세·감면 공할	158
83. 주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공할	158
84.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액 공할	159
85. 지방세 감면 관리 규정	160

<조세특례제한법>상 2020년 입법도래항목>

86. 2020년 입법도래 공할	162
-------------------	-----

<부록>

조세영어 해설	188
---------	----------

Part 1

Tax Statistics 2020

우리나라 조세개요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분류

구분	내용
국세와 지방세	과세권 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 중앙정부 vs. 지방세: 지방정부
내국세와 관세	과세대상 물건이 국경을 넘는 거래인지 국경 내의 거래인지에 따른 분류 ◆ 내국세: 국경 내 거래 vs. 관세: 국경을 통한 거래
인세와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지에 따른 분류 ◆ 인세: 소득세 vs. 물세: 소비세, 재산세 등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른 분류 ◆ 보통세: 일반회계 세원 ◆ 목적세: 특별회계 세원(예: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단위에 따른 분류 ◆ 종가세: 화폐단위로 측정 ◆ 종량세: 종량, 용량, 건수, 인원 등 예: 주세의 주정(kl), 개별소비세 경마장 입장행위(1인1회 입장시)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된 세원의 존재여부에 따른 분류 - 부가세: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조세체계의 변천

● 정부수립기(1948~1960년)

- 정부수립 이후 총 45개 세목으로 새롭게 출범한 조세제도는 전후복구기 재정수입 증대 목적의 세제개편 단행

국 세 체 계	한국전쟁 직전(1950년)	전후복구기(1958년)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수익세제: 지세, 영업세, 광세 재산세제: 상속세, 증여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청량음료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작물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관세 기타: 인지세, 톨세, 마권세, 면허세	• 직접세 소득(수익)세제: 소득세, 법인세 수익세제: 영업세 재산세제: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자동차세, 등록세(한국전쟁), 광세, 토지소득세(한국전쟁) 특별소득세: 임시와환특별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통행세, 관세 기타: 교육세, 마권세, 톨세

지 방 세 체 계	한국전쟁 직전(1949년 지방세법 제정)	전후복구기(1958년)
	• 도세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입정세 • 시·읍·면세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도세부가세: 호별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 부가세독립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축건세, 선세, 교통세 • 목적세 서울특별시·교육구교육세: 초등교육세(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지방자치단체: 필요성 인정시 목적세 부과	• 도세 국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호별세, 가옥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취득세, 차량세, 특별행위세, 동력세, 면허세(1954년), 선세 • 시·읍·면세 국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도세부가세: 도의 11개 독립세목 전체에 대한 부가세 • 목적세 교육세: 초등교육세(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기타목적세: 동세, 리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경제개발기(1961~1980년)

- 경제개발기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수단 기능강화 및 세제 간소화로 현행 조세체계의 기본구조 완성

국 세 체 계	1967년 세제개편	1976년 세제개편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등록세, 부동산투기억제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물품세, 통행세, 입장세, 영업세, 전기가스세, 관세, 석유류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기타: 톨세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1974년) • 간접세 소비세: 주세, 전화세(1974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 목적세 방위세(1975년)

지 방 세 체 계	1967년 지방세제개편	1976년 지방세제개편
	• 도세 독립세: 취득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 서울특별시·부산시 독립세: 취득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재산세, 농지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시·군세 도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유흥음식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면허세부가세 독립세: 재산세, 농지세 • 목적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도세 독립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서울특별시·부산시 독립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시·군세 독립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 목적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개방경제기(1981~2000년)

- 개방경제가 조세체계의 큰 변화없이 WTO 가입 등 개방경제기의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일부 세목 신설(농어촌특별세 등)

국 세 체 계	1981년 세제개편	1994년 세제개편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간접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1978년 재도입) 목적세 방위세, 교육세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간접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지 방 세 체 계	1984년 지방세 개정	1990년 지방세제개편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특별시세·직할시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판매세 목적세 특별시세·직할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특별시세·직할시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자치구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특별시세·직할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자치구세: 사업소세

● 외환위기 이후(2001~현재)

- 외환위기 이후 소득재분배 조세정책에 맞는 세목별 개편(EITC도입)과 부동산보유세제 강화(종합부동산세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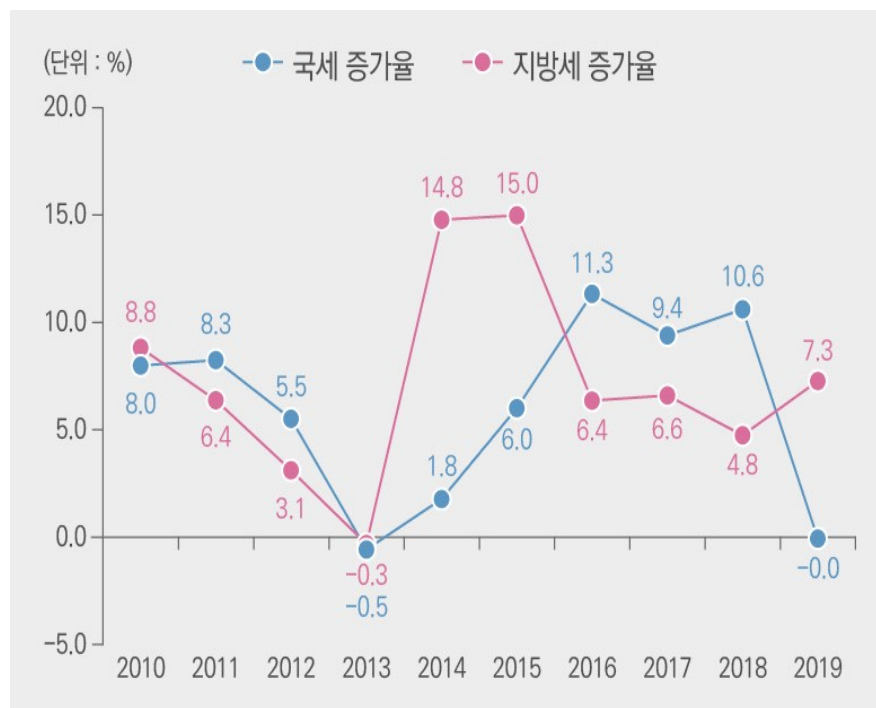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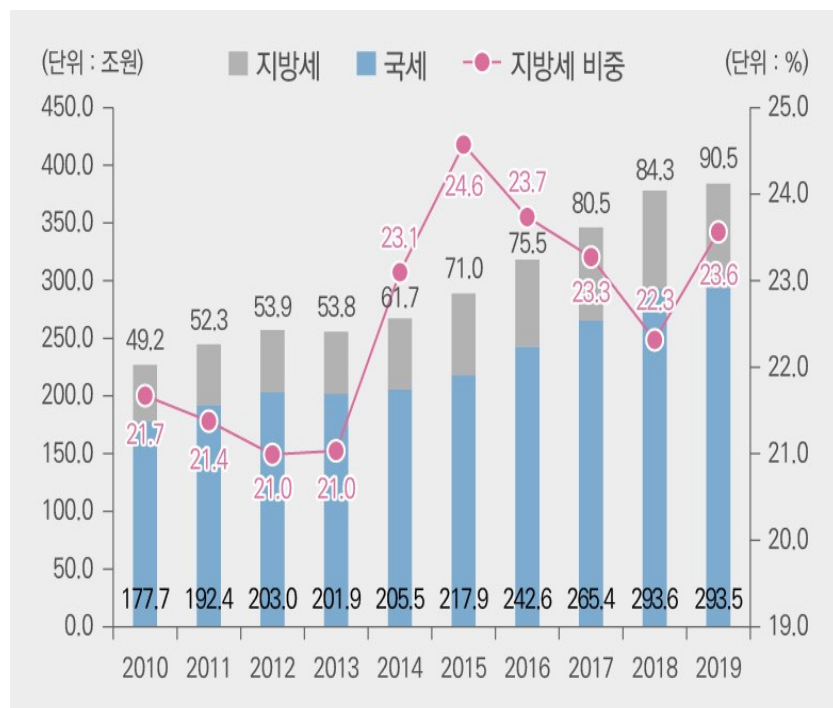
국 세 체 계	2005년 세제개편	2008년 세제개편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 방 세 체 계	2001년 지방세제개편	2010년말 지방세제개편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특별시세·광역시세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자치구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도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2000) 특별시세·광역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자치구세: 사업소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특별시세·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주행세 흡수) 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주행세 흡수)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재산세(서울시와 공동과세) 목적세 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특별시세·광역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조세수입

● 2019년 총조세는 383.9조원

- 총조세: ('10년) 226.9조원 → ('19년) 383.9조원
-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10년) 21.7% → ('19년) 23.6%



조세부담률

● 2019년 조세부담률은 전년대비 0.1%p 상승(19.9 → 20.0%)

• 국민부담률(잠정)은 전년대비 0.6%p 상승(26.7% → 27.3%)

▶ 조세부담률(%) = 총조세(국세+지방세)/명목GDP × 100

국민부담률(%) = (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 × 100

● 조세부담률: 2018년 우리나라 19.9%, OECD 24.9%, G7 25.0%

국민부담률: 2018년 우리나라 26.7%, OECD 34.0%, G7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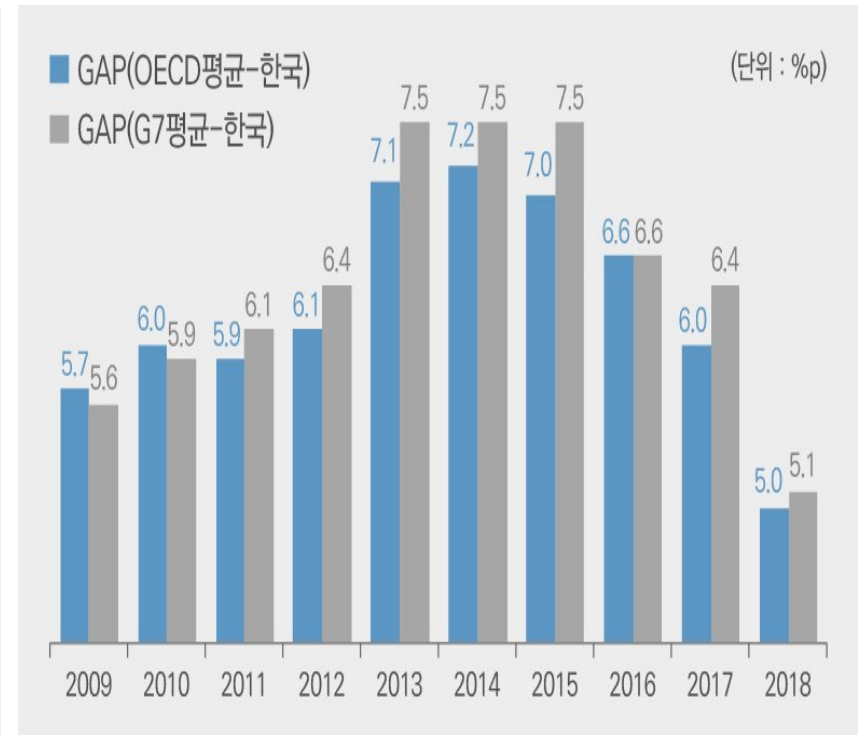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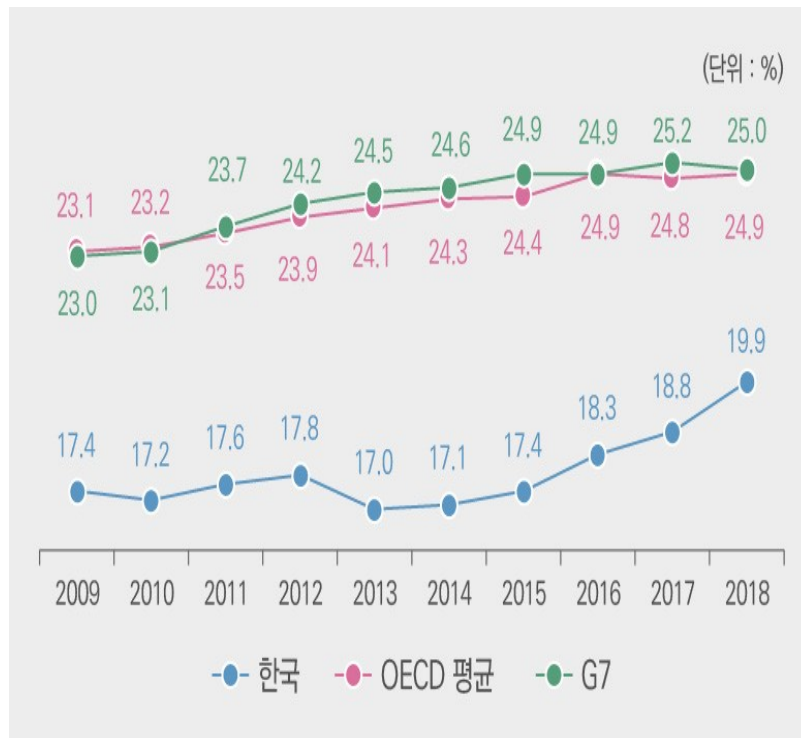
(단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부담률	지방세부담률
2010	17.2 [22.4]	13.4	3.7
2011	17.6 [23.2]	13.9	3.8
2012	17.8 [23.7]	14.1	3.7
2013	17.0 [23.1]	13.5	3.6
2014	17.1 [23.4]	13.1	3.9
2015	17.4 [23.7]	13.1	4.3
2016	18.3 [24.7]	13.9	4.3
2017	18.8 [25.4]	14.5	4.4
2018	19.9 [26.7]	15.5	4.4
2019	20.0 [27.3]	15.3	4.7

주: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 조세부담률 격차: 한국 vs. OECD vs. G7

- OECD평균과의 격차: '09년 5.7%p → '18년 5.0%p
- G7 평균과의 격차: '09년 5.6%p → '18년 5.1%p



- 주: 1. 2020년 4월 28일 가입한 콜롬비아를 포함한 OECD 37개국 기준
 2. 일본, 호주는 2018년 자료 미발표
 3.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4. 2018년 OECD평균 및 G7 평균은 미발표된 일본과 호주는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국제비교: 조세구조

●명목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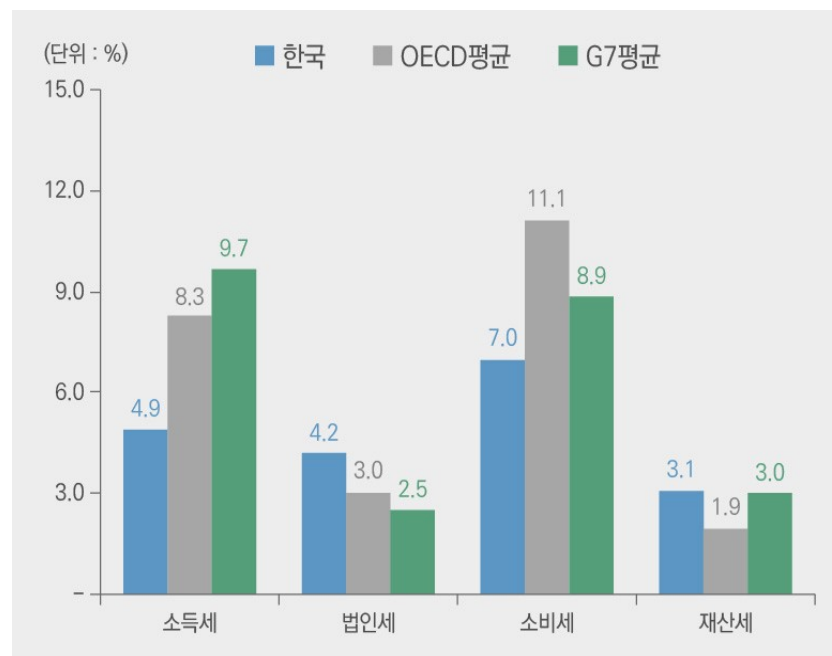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음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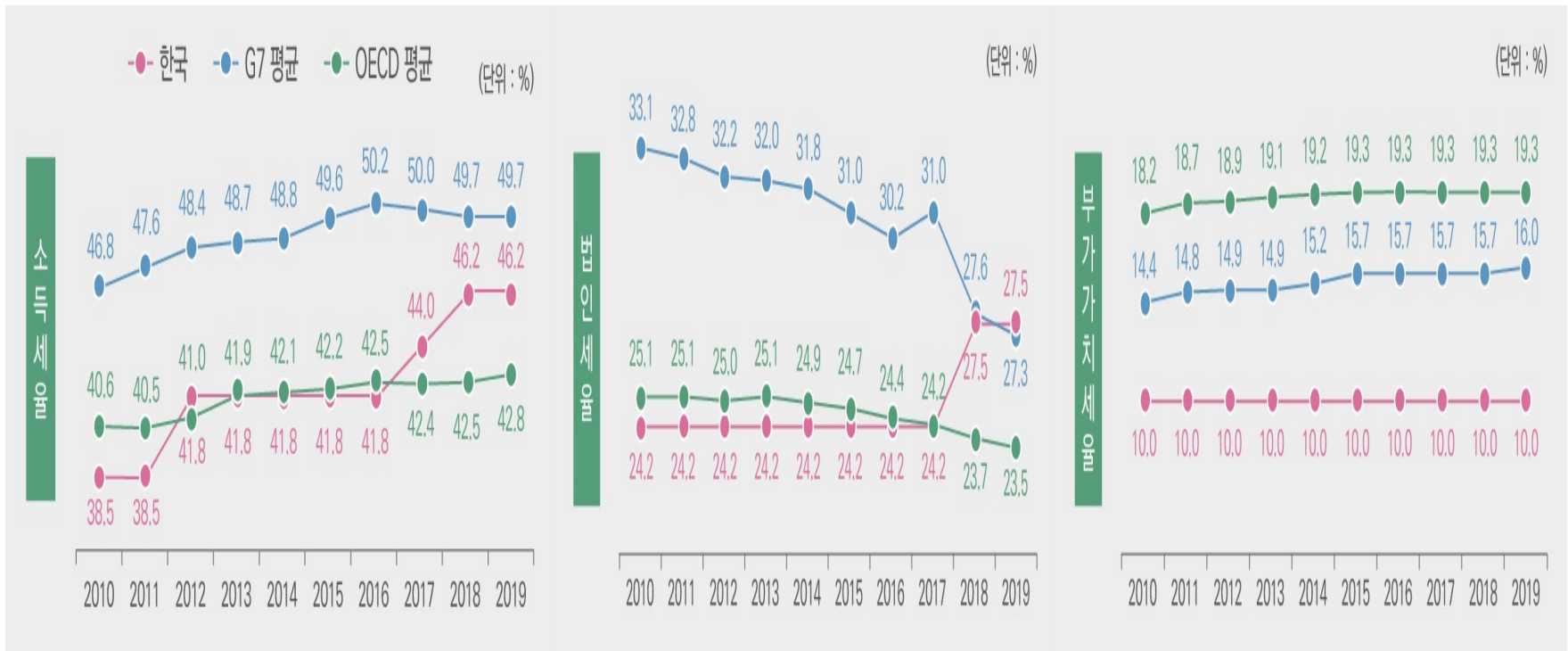
(단위: %)

	한국	OECD평균	G7평균
소득세	4.9	8.3	9.7
법인세	4.2	3.0	2.5
소비세	7.0	11.1	8.9
재산세	3.1	1.9	3.0
기타	0.8	0.6	0.9

주: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를 적용
하여 산출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0.7.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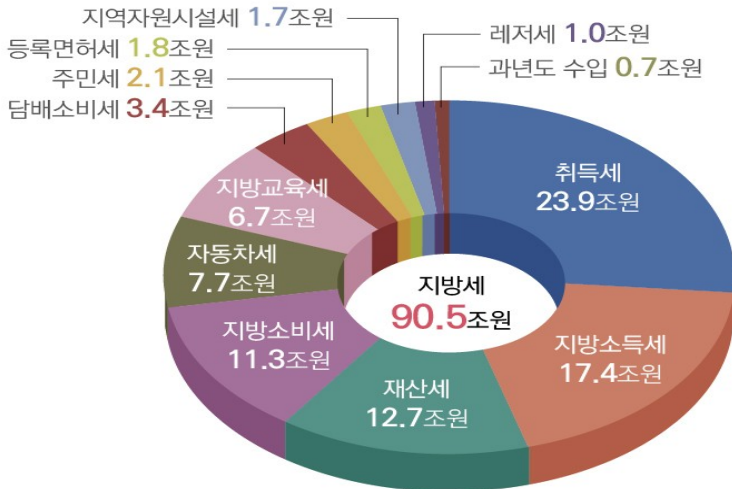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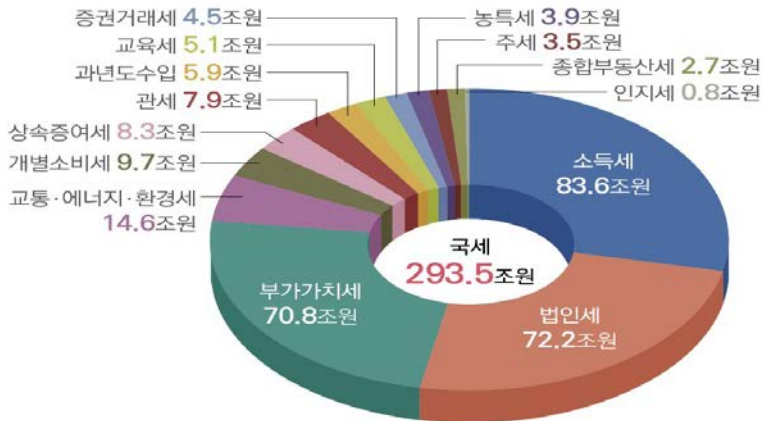
● 주요 세목 세율 추이



주: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방세등 포함 최고세율,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
 자료: OECD Tax Database(2020.7.31. 기준)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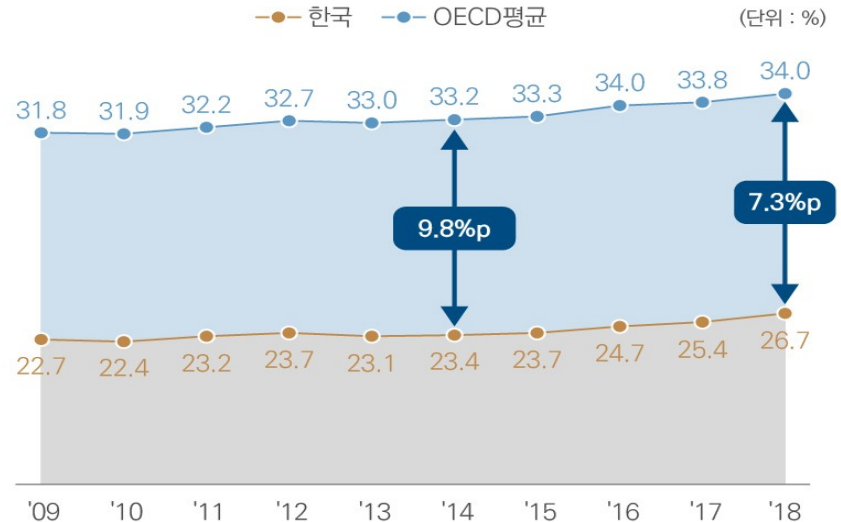
국세·지방세 세목구성 및 세수입 현황(2019년)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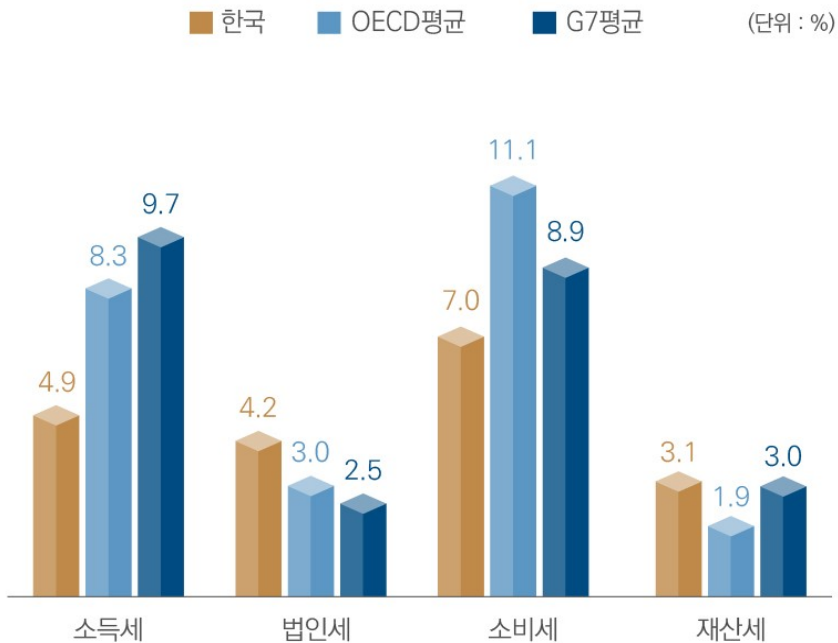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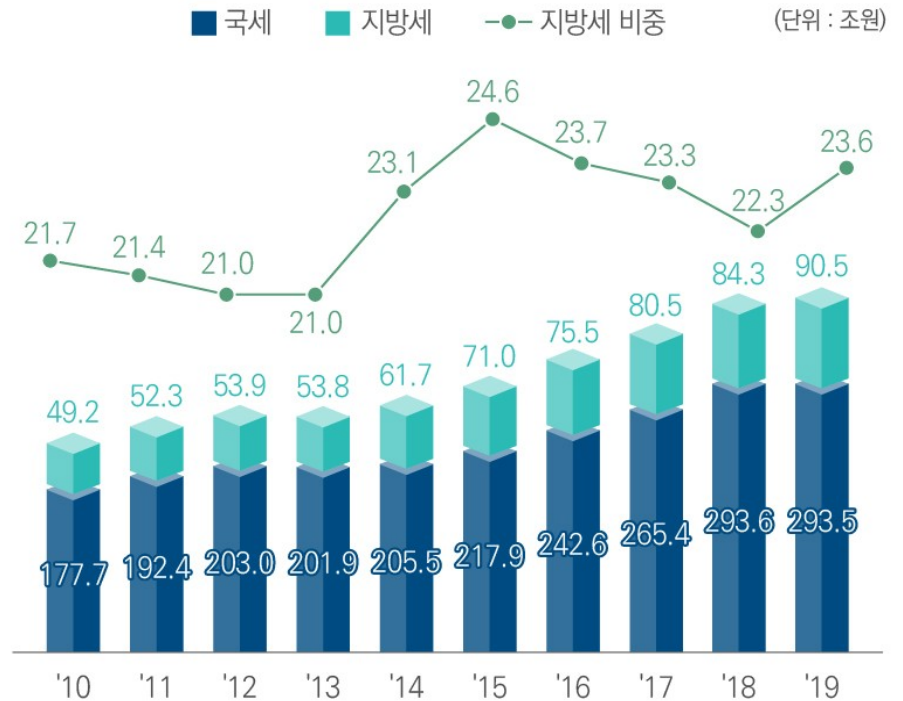


조세 비중

명목 GDP 대비 세수 비중(2018년)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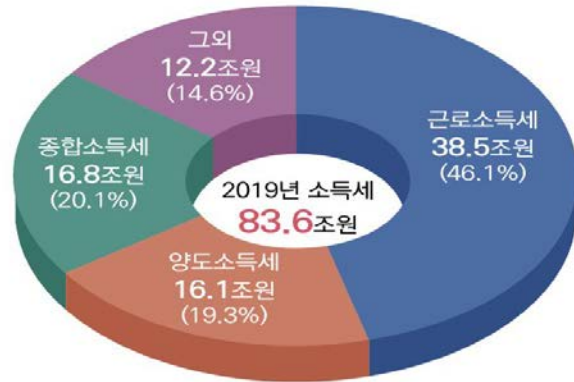


* 총 조세= 국세+지방세

※ 꺾은선은 지방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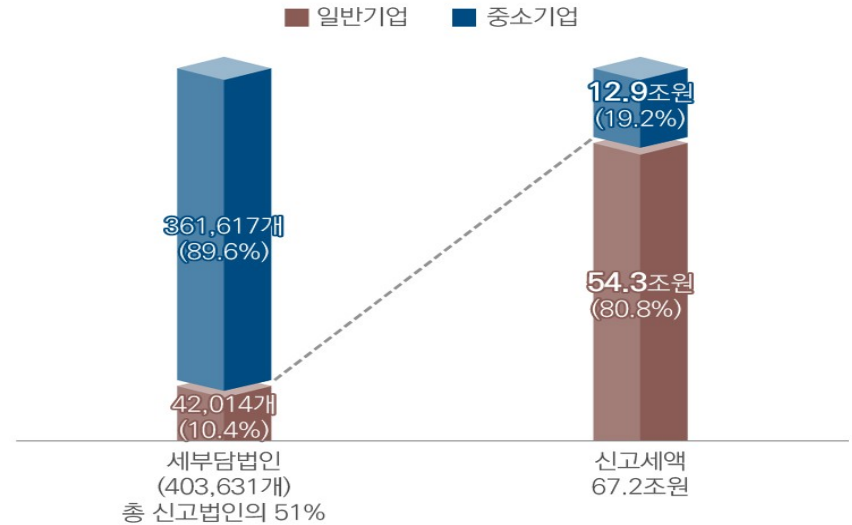
소득세 세입 및 면세자 비율

소득별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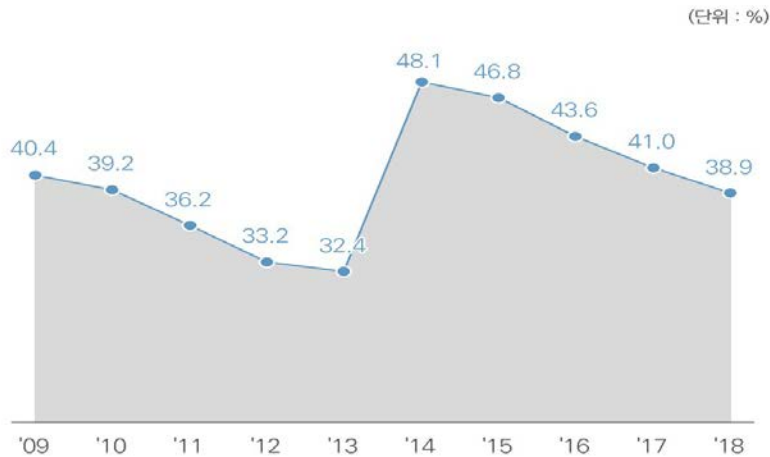


* 그외 항목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 소득세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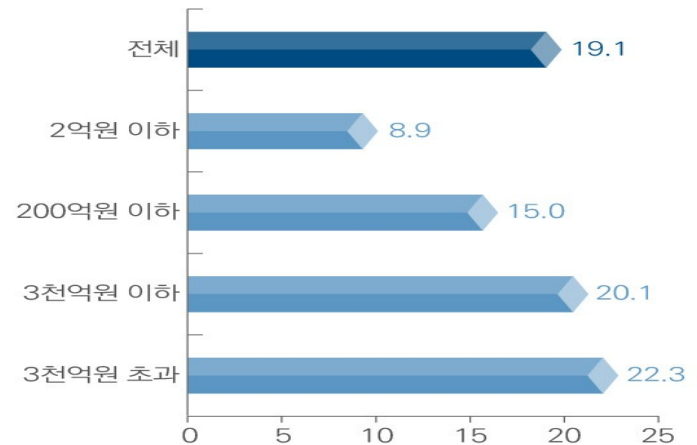
법인세 세부담 구조(2019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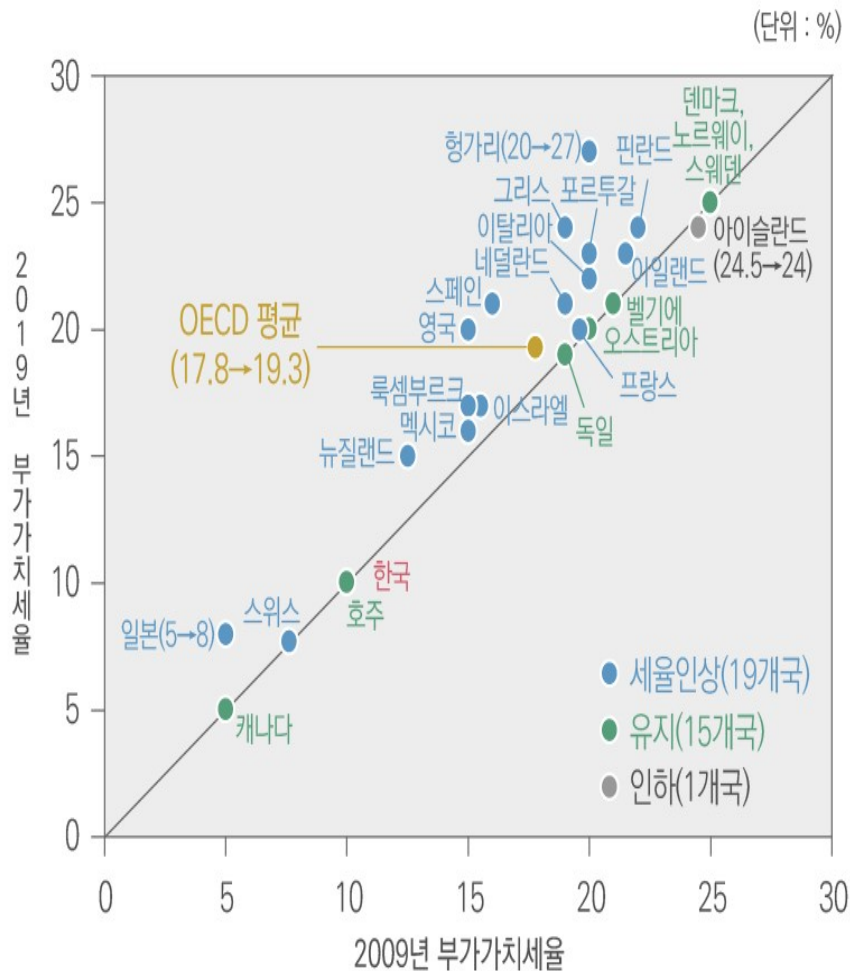


평균실효세율 (국내 총부담세액/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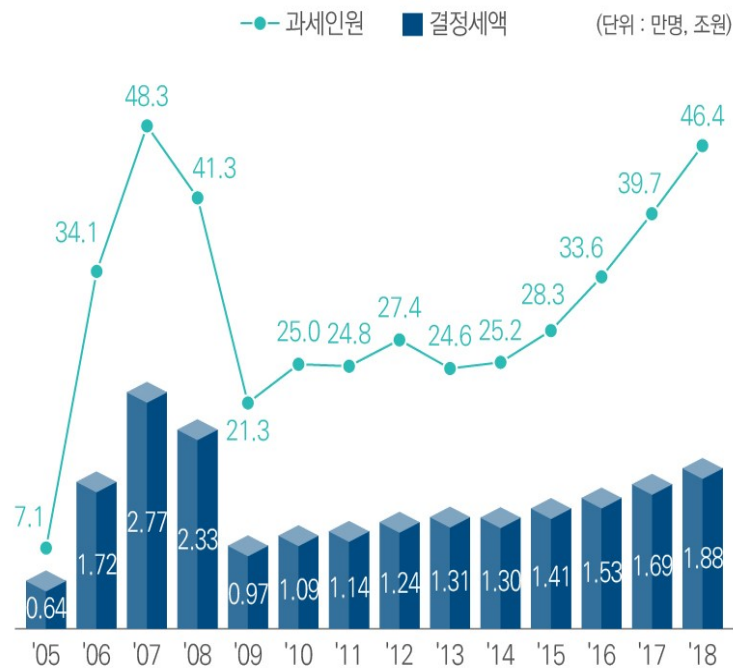
부가가치세 부담 현황

OECD국가들의 세율변화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결정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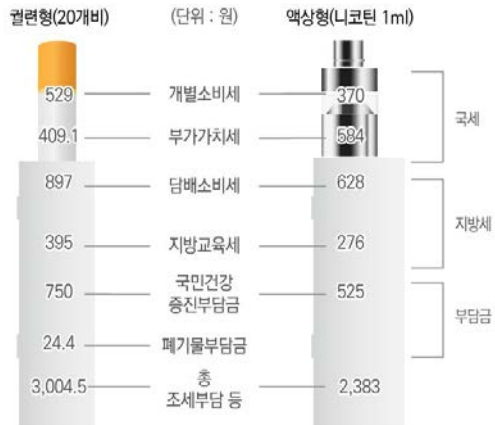


담배의 조세부담 등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1,176.5원을 기준으로 계산

전자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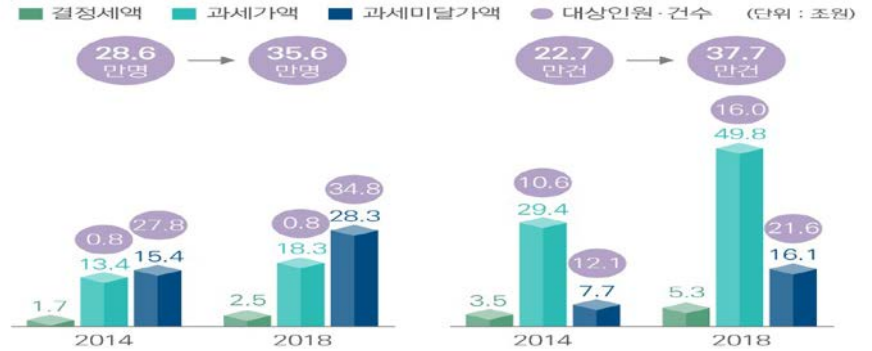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1,495.5원을 기준으로 계산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4,043원 (1ml 기준으로 환산)을 바탕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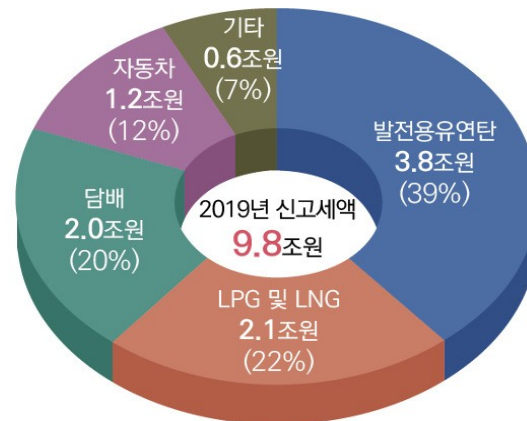
상속세 및 증여세 추이

상속세 추이
(2014년 VS 2018년)

증여세 추이
(2014년 VS 2018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신고세액



* ()는 비중

유류(휘발유·경유)의 조세부담

휘발유 1ℓ 당 조세부담



* 부가가치세는 세전 가격 392.08원/ℓ (보통 휘발유, 2020. 6.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

경유 1ℓ 당 조세부담



* 부가가치세는 세전 가격 425.02원/ℓ (자동차용 경유, 2020. 6.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

맥주·탁주의 1ℓ 당 조세부담

맥주

(단위 : 원)

생맥주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1,033원/ℓ 을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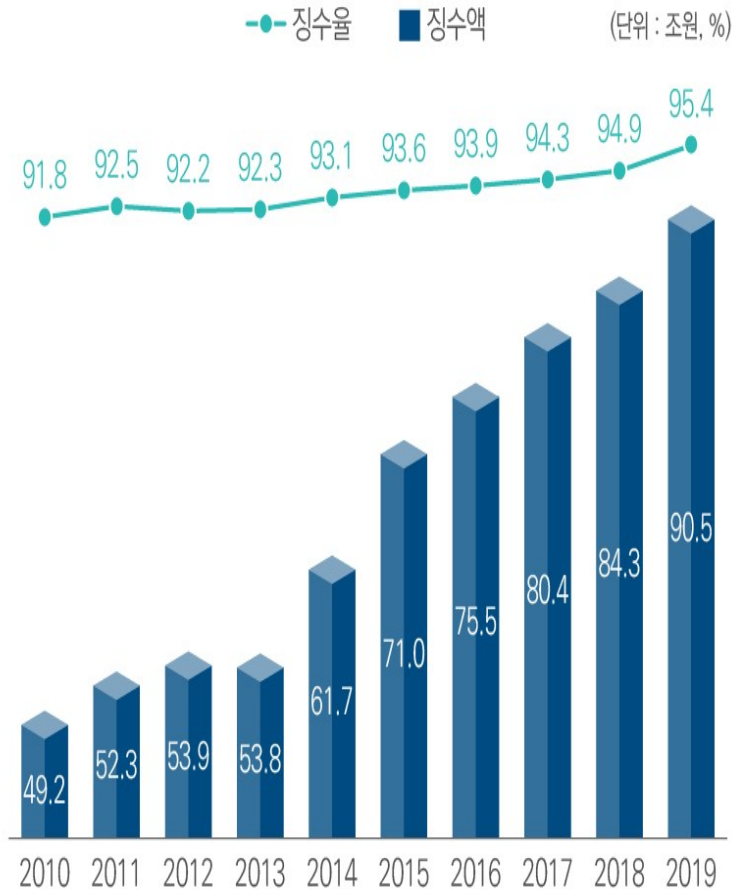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951.5원/ℓ 을 기준으로 계산

탁주



*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격 988원을 기준으로 계산

지방세 징수액 추이



시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주요국의 특징적인 지방세 세목

미국	●관광·숙박세 ●렌트카세 ●보험(영업)세(뉴욕주) ●자동차등록 부가세(뉴욕주) ●고속도로 사용세(뉴욕주) ●오염세(미네소타주)
독일	●건세 ●유흥장세 ●사냥 및 낚시세 ●음료수세 ●야영장세: 장기캠핑자 ●말의 보유 과세 ●숙박세(베를린, 함부르크)
프랑스	●건축물 없는 토지의 토지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기업 토지 부담금 부가세 ●청소세: 도로 연변의 건물 소유자 ●공가세: 거주기간 30일 이내로 2년 이상 빈 집 ●여행세: 관광객에 부과, 파리는 10%의 데파르트망세 부과
일본	●자동차 중량세 ●항공기 연료세 ●숙박세 ●낚시세